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목차

- I. 검토배경
- II. 국내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 III. 해외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 IV.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I. 검토배경

보증연장 서비스의 개념

- 보증연장 서비스(Extended Warranty, “EW”)는 무상 보증 기간 종료 후의 유상 보증 서비스임
 - 무상 보증 서비스: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일정 기간 제품의 하자, 통상적 소모·마모를 무상으로 담보
 -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무상 보증 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보증 기간을 연장해서 제품의 하자, 통상적 소모·마모를 담보



- 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 확대(제3자), 담보 범위 확대(파손 등을 담보)의 경우도 포함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 논란

•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은 보험회사만 제공 가능
- 실제로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자동차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가 문제됨
 - ※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는 경우(부가서비스) vs.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보험상품)**

"자동차 보증연장 서비스, 보험업법 소지" 주장 나와 한국일보, 2015.09.14, 네이버뉴스

국내 완성차와 수입차 업체들의 '자동차 보증연장 상품'은 보험업 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2015 국감] 자동차업계 보증연장 판매, 보험업

있는 '자동차 보증연장 서비스'상품이 보험업 허가라면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불법 영업 논란에 휘말린 자동차 보증연장 서비스

있는 '자동차 보증연장 서비스'상품이 보험업 허가라면,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강기정 "현대차, 보증연장 서비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은 자동차 보증연장 상품 판매에 대해 금융위에 문의한 결과 자동차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이 보험업법



금융당국, "제조사가 직접 안 파는 자동차 보증연장 상품, 허가 받아야"

(...)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보증기간 연장상품 판매의 법 위반 여부를 금융위에 질의한 결과 '자동차 제조사나 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자동차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금융위가 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제3자를 통해 파는 자동차 보증연장 상품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험에 해당한다는 뜻이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조사나 판매사가 제공하면 부가서비스, 그 외 제3자가 제공하면 부가서비스가 아닌 상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10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휴대폰 보험 등 제조사들이 판매하는 보험 유사상품을 보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이 같은 유사상품이 증가하면서 판단을 연기한 바 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런 상품에 대해 입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 논란

-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에 관한 다양한 의문이 제기됨
 -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상품인지?
 -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인데,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면 항상 부가서비스인지?
 - ※ [참고]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2018. 5. 1. 부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 제4조 제1항)
-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상품의 구분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부재 → 입법적 정리 필요

<참고> 보증연장보험 현황

-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으로 제공하는 사례로는 L 손해보험의 제품보증연장보험이 유일

| | |
|-----------------|---|
| <p>보상하는 손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마트에서 구매한 가전제품의 고장으로 발생한 실제 수리비를 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장이란, 해당 제품이 제조사의 품질보증의 내용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발생시점의 시가로 보상 |
| <p>주요 면책 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품질보증의 상태·조건·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경우 • 제조사의 무상수리가 가능한 경우 • 무허가수리업체 또는 해외 수리업체에 직접 의뢰한 비용 • 사용자의 임의 개조 및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손해 • 통상적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점진적인 기능 저하,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 파손 및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
| <p>보험기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사의 무상 품질보증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년 |
| <p>보험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한 가전제품 가격의 약 1.3% 수준 (일시납) |

II. 국내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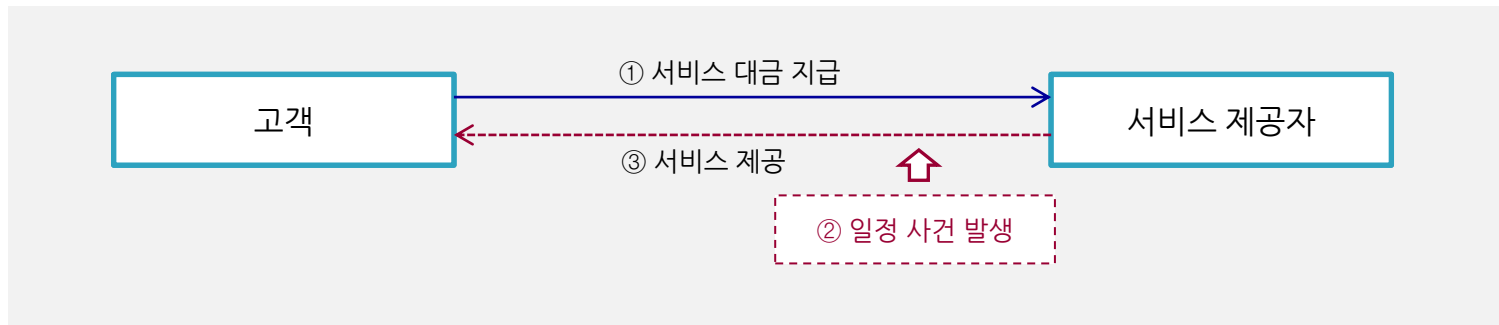
보험의 정의

• 관련 법규 및 판례상 보험의 정의

| | |
|-----------------------|---|
| <p>상법상 보험계약</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
| <p>보험업법상 보험상품</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 <p>판례상 보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리 일정률의 금액(보험료)을 출연하여 공동준비 재산을 구성하고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경감시키려는 제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일 것 ② 경제적인 불안을 제거·경감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비축금을 마련하는 제도일 것 ③ 그 방법으로서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해 금부·반대금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일 것 |

보험의 정의

- 관련 법규와 판례는 보험의 의미에 대해 원론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수준
 - 상법, 보험업법 및 판례상 보험의 주요 요소는 ‘우연한 사고’, ‘위험 보장 목적’, ‘보험료의 수수를 통한 공동 재산의 구축’, ‘확률계산방법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균형 유지’, ‘보험급부의 지급’ 등
 - 위 요소들도 비교적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
- 단순 서비스계약과 보험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 (예시) 보안전문회사의 방범서비스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

- 보증연장 서비스도 보험의 주요 요소들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

- 보증연장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으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음

- 제품의 제조사·판매사의 품질 보증의 연장일 뿐 **새로운 위험의 인수가 아님**
- 제품의 하자, 통상적 소모·마모(wear and tear)는 **제품에 내재된 위험**으로 볼 수 있고 **우연성이 약함**
- **규제 실익이 적은 소규모 사업**으로서 보험상품으로 규제할 정책적 필요성이 없음

※ 감독당국 실무상으로도 자동차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단순 부가서비스로 인정한 사례가 있음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

- 현재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법 조항은 없음
 - 과거 명시적인 제외 조항을 두려는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최종 법령 개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2010년 보험업법 개정시 보험업법 규정 대상에서 제외하려던 상품>

| 구분 | 해당상품명 | 해당상품 내용 | 비고 |
|-----------|-------------|--|-----------------|
| 기타 서비스 계약 | 의료서비스 계약 | 의료기관 등의 우연한 사고에 따른 의료서비스제공 계약 | 규제실익 이적은 소규모 사업 |
| | Warranty 계약 | 일반기업의 품질보장차원에서 실시하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 수리서비스 제공 계약 | |
| | Waiver 계약 | 렌트차량의 손상 및 도난에 대한 구상포기 등 권리포기 계약 | |

자료: (구)재정경제부(2007.12), 『보험업법 개정 요강』

<2015년 12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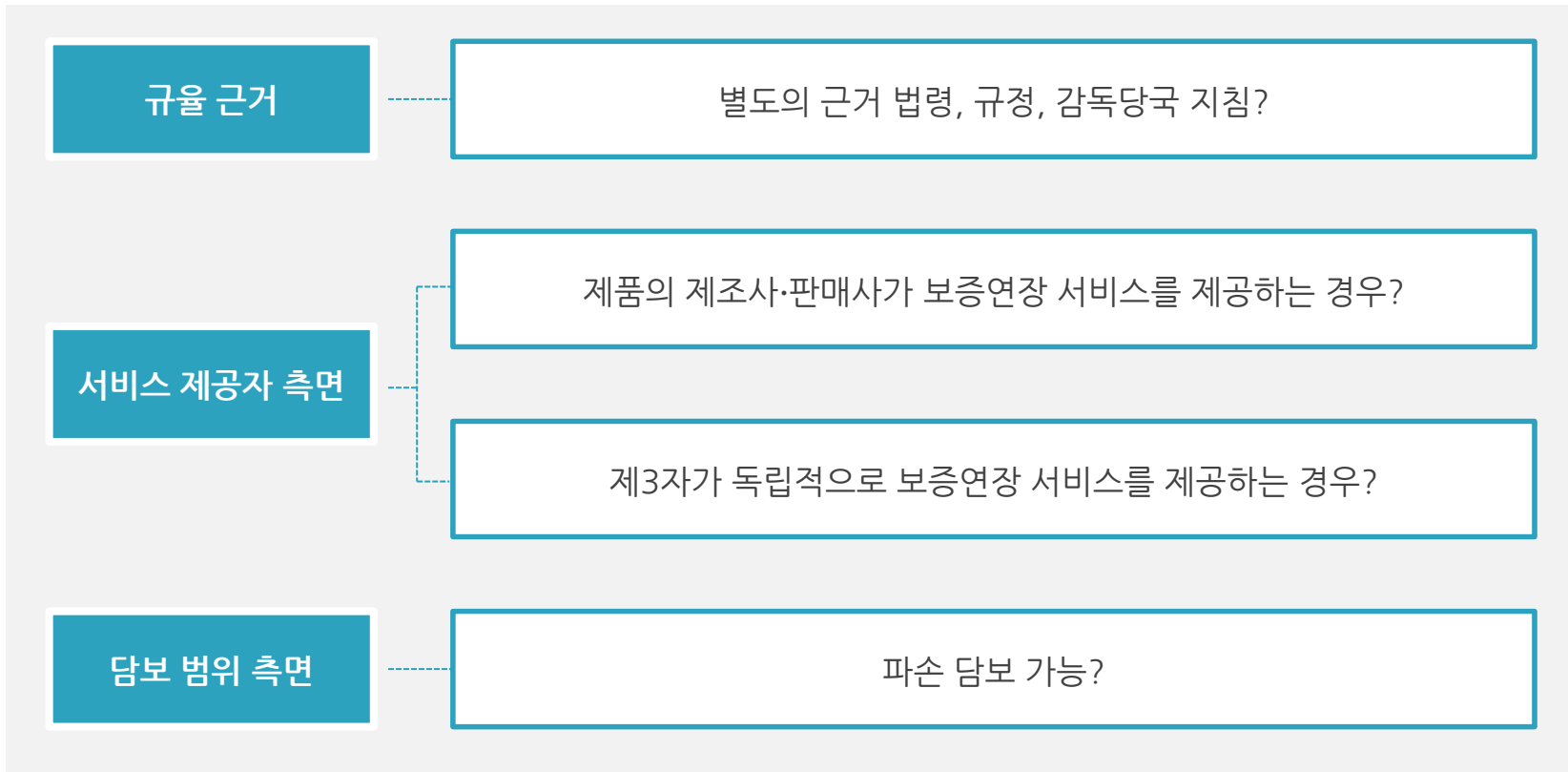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의2 (보험상품) ①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6. (생략) <신설> | 제1조의2(보험상품)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제19조제2항 각 호의 범률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는 제외한다)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무상교환, 품질보증, 이행보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후 관리에 관한 서비스보증계약</u> |

자료: 금융위원회(2015.12.2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31호

III. 해외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현황

주요 검토 사항

• 해외 규제 사례에서의 주요 쟁점



영국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규제 현황

| 구분 | | 영국 | 일본 | 미국 |
|------------------|---------|--|---|--|
| 규율 근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FCA 지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청(金融庁) 감독지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IC 모델법 |
| 서비스 제공자 | 제조사·판매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제조사·판매사의 일반적인 보증서비스보다 내용·범위·기간이 현저히 확장된 경우 → 보험에 해당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 수준의 규제 적용 받을 수 있음 - 다만, 제3자의 경우보다 약한 수준의 규제 |
| | 제3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에 해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 보험에 해당 수탁자로서 수리·교환 업무를 수행할 뿐 서비스 제공 의무의 주체는 제조사·판매사인 경우 →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 수준의 규제를 적용 받음 - 등록 의무, 재무 규제, 주 보험감독당국의 검사·제재 등 |
| 담보 범위 (파손 담보 여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손 담보 가능 여부는 불명확 - 다만, 제조사·판매사의 일반적인 보증서비스보다 내용·범위가 현저히 확장된 경우 보험에 해당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있는 파손 담보 가능하다고 해석한 사례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별 입법례에 따라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 담보 가능 |

영국에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규제 현황

- 영국에서는 FCA 지침을 통해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계약 해당 여부에 대해 규정
 - 영국 금융감독당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 * The Perimeter Guidance manual, Chapter 6, 「Guidance on the Identification of Contracts of Insurance」, (“PERG”)
 - 보험계약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계약 유형들을 예시하고 보험계약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

The Perimeter Guidance manual

Chapter 6

Guidance on the Identification of Contracts of Insurance

Section 6.7 : Examples

PERG 6 : Guidance on the Identification of Contracts of Insurance

6.7.7

G

Example 3: manufacturers' and retailers' warranties

Under a simple manufacturer's or retailer's warranty the purchase price of the goods includes an amount, in consideration of which the manufacturer undertakes an obligation (the warranty) to respond (without further expense to the purchaser) to specified defects in the product that emerge within a defined time after purchase. When the warranty operates, the manufacturer or retailer provides repairs or replacement products in response to a defined event (the emergence of a latent defect in the product), which is adverse to the interests of the purchaser and the occurrence of which is uncertain. In

6.7.11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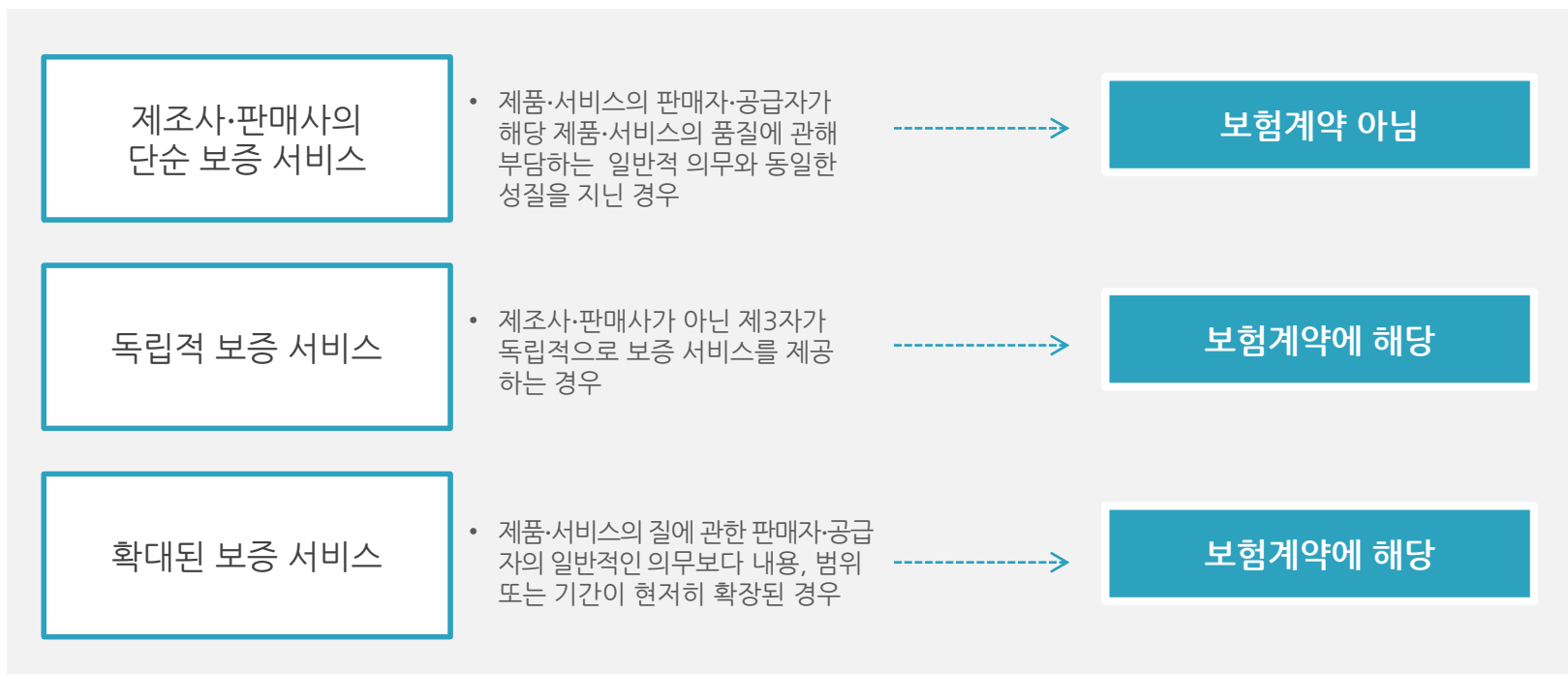
Example 4: separate warranty transactions and extended warranties

It follows from ■ PERG 6.7.10 G that the FCA is unlikely to be satisfied that an obligation in a contract of sale or supply is of the same nature as the seller's or supplier's usual obligations as regards the quality of goods or services, if that obligation ha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features:

영국에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규제 현황

• PERG상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 해당 여부

- PERG는 ①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는 단순 보증 서비스**(manufacturers' and retailers' warranties)와 ②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 또는 **확대된 보증 서비스**(separate warranty transactions and extended warranties)를 구분



일본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규제 현황

| 구분 | | 영국 | 일본 | 미국 |
|------------------|---------|--|---|--|
| 규율 근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FCA 지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청(金融庁) 감독지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IC 모델법 |
| 서비스 제공자 | 제조사·판매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제조사·판매사의 일반적인 보증서비스보다 내용·범위·기간이 현저히 확장된 경우 → 보험에 해당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 수준의 규제 적용 받을 수 있음 - 다만, 제3자의 경우보다 약한 수준의 규제 |
| | 제3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에 해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 보험에 해당 수탁자로서 수리·교환 업무를 수행할 뿐 서비스 제공 의무의 주체는 제조사·판매사인 경우 →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 수준의 규제를 적용 받음 - 등록 의무, 재무 규제, 주 보험감독당국의 검사·제재 등 |
| 담보 범위 (파손 담보 여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손 담보 가능 여부는 불명확 - 다만, 제조사·판매사의 일반적인 보증서비스보다 내용·범위가 현저히 확장된 경우 보험에 해당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있는 파손 담보 가능하다고 해석한 사례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별 입법례에 따라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 담보 가능 |

일본에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규제 현황

• 일본에서는 금융청 감독지침을 통해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계약 해당 여부에 대해 규정

- 일본 금융청(金融庁)의 감독지침에서, ‘사고 발생에 관계 없이 미리 금전을 징수하고 사고 발생 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규정함
 - * 「소액단기보험업자에 대한 감독지침」(少額短期保険業者向けの監督指針)
- 해당 약정의 내용, 해당 서비스의 제공 주체 및 방법, 기존에 해당 서비스가 보험거래와 다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 보험업법의 규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도록 함
- 이와 관련하여 “**물건의 제조·판매에 부수하여 그 고객에게 해당 상품의 고장 시 수리 등을 하는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

保険会社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別冊）

（少額短期保険業者向けの監督指針）

（注2）予め事故発生に関わらず金銭を徴収して事故発生時に役務的なサービスを提供する形態については、当該サービスを提供する約定の内容、当該サービスの提供主体・方法、従来から当該サービスが保険取引と異なるものとして認知されているか否か、保険業法の規制の趣旨等を総合的に勘案して保険業に該当するかどうかを判断する。なお、物の製造販売に付随して、その顧客に当該商品の故障時に修理等のサービスを行う場合は、保険業に該当しない。

일본에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규제 현황

• 금융청 법령적용사전확인절차(No Action Letter 제도)를 통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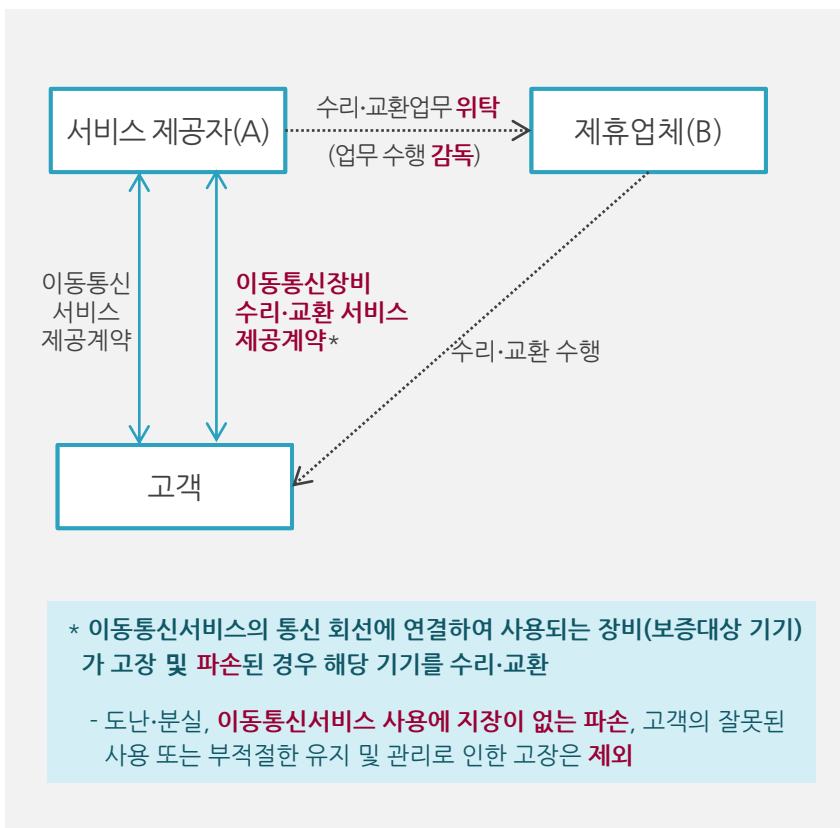
- 수리·교환 서비스 사업이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근거

| | |
|--------------------|---|
| 서비스의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적 손실 보전의 약속이 아니라 용역 또는 대체품 제공의 약속일 것 |
| 기본계약과의 관련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수리·교환 서비스가 해당 물건의 제공에 밀접히 관련된 부수적인 거래일 것 |
| 서비스의 성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수리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또는 메이커 보증의 연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
| 서비스의 제공 및 책임 부담 주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해당 수리·교환 서비스를 물건의 제조사·판매사가 직접 제공하거나, ② 실제 수리·교환은 제3자(수탁자)가 수행하더라도 해당 수탁자가 물건의 제조사·판매사의 감독 하에 있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물건의 제조사·판매사가 지는 경우일 것 |
| 규제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준비금 적립이나 보험계리사의 관여 등 재무적 규제가 필요할 정도의 고액의 의무 제공을 예정하고 있지 않을 것 |

일본에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규제 현황

• 일본 금융청 해석사례 (1) -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2016. 1. 18. 금융청 법령적용사전확인절차(회답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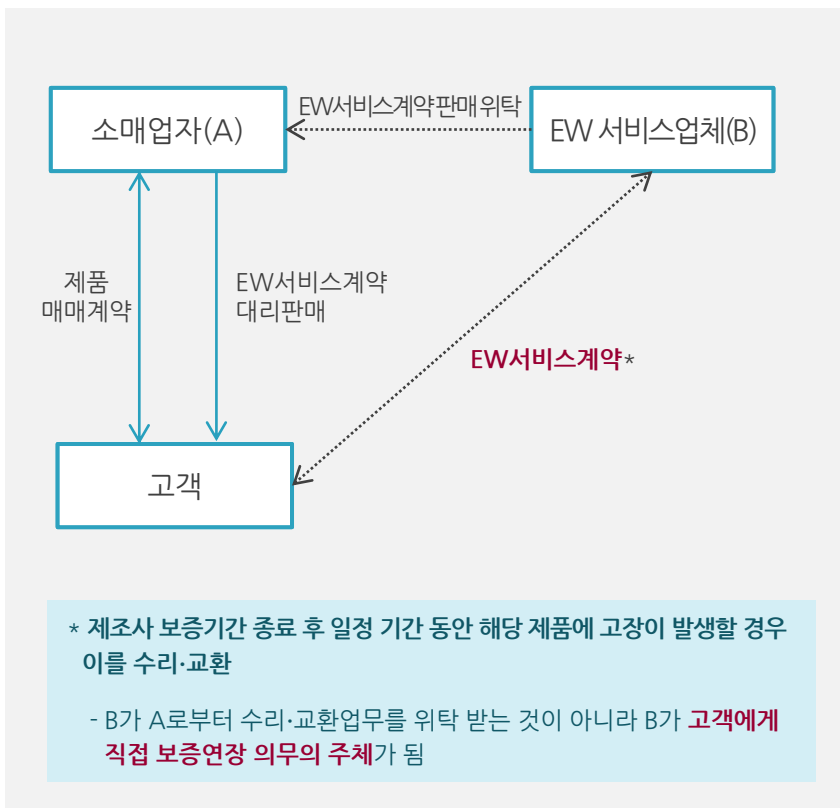
- 용역·대체품의 제공이며 **금전적 손실 전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 본건 서비스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 거래**에 해당
 - 보증대상 기기의 정상적 작동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요한 부분
 - 서비스 제공 대상 고객(해당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과 대상 기기(해당 이동통신서비스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장비)가 한정되고, 대상 사유도 제한적
- B는 A의 감독을 받고 A에게 정기적 보고 의무를 지며, 본건 **서비스 제공의 최종 책임은 A가 부담**
- 1사고당 최대 4만엔 한도로 **재무 규제 필요가 낮음**

※ 고장 뿐만 아니라 **파손을 함께 담보**하는 수리·교환 서비스에 대해 보험이 아니라고 인정한 사안

일본에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규제 현황

• 일본 금융청 해석사례 (2) - 보험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2012. 5. 14. 금융청 법령적용사전확인절차(회답서)



• 거래 구조상 실질적으로 **보험 거래와 다르지 않음**

- 제품 구매자에 대해 민사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그 책임을 계약으로 확장해서 부담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래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제3자가 계약에 의해 상품 구매자로부터 상품 고장 위험을 인수하여 위험을 총체적으로 관리**

• 보험업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됨

- 대리점망을 구성하여 널리 고객을 모집
- 수리 금액에 상한이 없음

※ 제조사·판매사 아닌 **제3자**가 독립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의 부담 주체가 되는 경우 보험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안

미국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규제 현황

| 구분 | | 영국 | 일본 | 미국 |
|------------------|---------|--|---|--|
| 규율 근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FCA 지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청(金融庁) 감독지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IC 모델법 |
| 서비스 제공자 | 제조사·판매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제조사·판매사의 일반적인 보증서비스보다 내용·범위·기간이 현저히 확장된 경우 → 보험에 해당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 수준의 규제 적용 받을 수 있음 - 다만, 제3자의 경우보다 약한 수준의 규제 |
| | 제3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에 해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 보험에 해당 수탁자로서 수리·교환 업무를 수행할 뿐 서비스 제공 의무의 주체는 제조사·판매사인 경우 →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 수준의 규제를 적용 받음 - 등록 의무, 재무 규제, 주 보험감독당국의 검사·제재 등 |
| 담보 범위 (파손 담보 여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손 담보 가능 여부는 불명확 - 다만, 제조사·판매사의 일반적인 보증서비스보다 내용·범위가 현저히 확장된 경우 보험에 해당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있는 파손 담보 가능하다고 해석한 사례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별 입법례에 따라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 담보 가능 |

미국에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규제 현황

• 미국에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한 NAIC 모델법이 있음

- 미국 전미보험감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에서 보증연장 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한 모델법을 마련

* Service Contracts Model Act(서비스계약 모델법)

- 서비스계약 모델법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 보험은 아닌 것으로 보되, 일정 정도 주 보험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

Model Regulation Service—January 1997

SERVICE CONTRACTS MODEL ACT

Table of Contents

- Section 1. Scope and Purposes
- Section 2. Definitions
- Section 3. Requirements For Doing Business
- Section 4. Required Disclosures -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 Section 5. Required Disclosures—Service Contracts
- Section 6. Prohibited Acts
- Section 7. Recordkeeping Requirements
- Section 8. Termination of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 Section 9. Obligation of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Insurers
- Section 10. Enforcement Provisions
- Section 11. Authority to Develop Regulations
- Section 12. Separability Provision

Section 1. Scope and Purposes

A. The purposes of this Act are to:

- (1) Create a legal framework within which service contracts may be sold in this state;
- (2) Encourage innovation in the marketing and development of more economical and effective means of providing services under service contracts, while placing the risk of innovation on the providers rather than on consumers; and
- (3) Permit and encourage fair and effective competition among different systems of providing and paying for these services.

Drafting Note: This model assumes that service contracts are exempt from the insurance code.

〈NAIC 서비스계약 모델법의 구성〉

| 조항 | 내용 |
|------------|---|
| Section 1 | 적용 범위 및 목적(Scope and Purposes) |
| Section 2 | 정의(Definitions) |
| Section 3 | 사업 영위 요건(Requirements For Doing Business) |
| Section 4 | 보험 관련 공시의무(Required Disclosures -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
| Section 5 | 서비스계약 관련 공시의무(Required Disclosures - Service Contracts) |
| Section 6 | 금지행위(Prohibited Acts) |
| Section 7 | 자료보존의무(Recordkeeping Requirements) |
| Section 8 | 보험의 해지(Termination of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
| Section 9 | 보험회사의 의무(Obligation of Reimbursement Insurance Policy Insurers) |
| Section 10 | 규제 조항(Enforcement Provisions) |
| Section 11 | 규제 제정 권한(Authority to Develop Regulations) |
| Section 12 | 분리가능성 조항(Separability Provision) |

미국에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규제 현황

• NAIC 서비스계약 모델법의 주요 내용

| | |
|------------------------|--|
| <p>적용 대상 서비스계약</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고 특정 기간 동안 자재 및 공정상의 하자(a defect in materials, workmanship) 또는 통상적인 마모(normal wear and tear)에 기인한 운영상 또는 구조상 결함의 경우에 해당 재물을 수리·교체·유지하거나 수리·교체·유지에 관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약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사·판매사의 서비스계약은 일부 규제만 적용(전면 배제 여부를 각 주가 자율적으로 판단) |
| <p>원칙</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법규 적용 배제 |
| <p>서비스계약에 대한 주요 규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계약 관리인(administrator)은 주 보험감독당국에 등록(registration) 필요 • 서비스계약에 따른 충실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무 요건 충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 ② 일정 금액[(총 수입-기지급보상액)x40%] 이상의 준비금을 유지 하면서 일정 금액[max {(총 수입-기지급보상액)x5%, 2만5천 달러}]이상을 주 보험감독당국에 예치, 또는 ③ 1억 달러 이상의 순자산 유지 의무 • 서비스계약상 일정 사항 명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 담보 여부, 면책 요건, 자기부담금, 해지 관련 사항 등 • 영업행위시 준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 광고 금지 의무, 구속조건부 거래 금지 의무, 거래 기록 보관 의무 등 • 주 보험감독당국의 조사·검사 및 제재 권한 |

미국에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규제 현황

• 서비스계약에 대한 주별 입법례

| 유형 | 주 | 내용 |
|------|----------------------|---|
| 제1유형 | New York 등 28개 주 | 적어도 한 분야에서 NAIC 모델법을 수용 (보험법규 배제+일정 규제) |
| 제2유형 | Virginia 등 13개 주 | 서비스계약이 보험법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만 규정 |
| 제3유형 | Delaware 등 8개 주 및 DC | 서비스계약에 대한 규정 없음 |
| 제4유형 | Florida | 서비스계약에 대해 NAIC 모델법보다 엄격한 규제 적용 |

자료: Nat Pope et al. (2014), "Extended Warranties in the U.S. Marketplace: A Strategy for Effective Regulation",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 33, No. 3

※ 서비스계약의 담보 범위 확대 사례 (New York, Nevada, Illinois, Florida 등)

자재 및 공정상의 하자 또는
통상적인 마모



전압 급상승(power surges) 및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

미국에서의 보증연장 서비스 관련 기타 법규

•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 관련 법규

- 미국 다수의 주에서는 휴대용 전자제품을 담보하는 보험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는 법규를 두고 있음 (Portable Electronics Insurance Laws)
- 해당 법규에서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의 범위에서 서비스계약을 배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도 함 (Delaware, New Jersey, North Carolina, West Virginia 등)

휴대용 전자제품 보험

“분실, 도난 및 기계적 결함·고장·파손 또는 기타 유사한 손실 원인에 기인한 작동불능 중 하나 이상에 대해 휴대용 전자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를 보장하는 보험”

적용 배제

“자재 및 공정상의 하자,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 전압 급상승 또는 통상적인 마모로 인한 운영상 또는 구조상 결함에 대해 해당 재물에 대한 수리, 교체, 유지에 한정된 담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계약 또는 연장보증은 제외된다”

<참고> 해외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규제 현황 요약

| 구분 | | 영국 | 일본 | 미국 |
|------------------|---------|--|---|--|
| 규율 근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FCA 지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청(金融庁) 감독지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IC 모델법 |
| 서비스 제공자 | 제조사·판매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제조사·판매사의 일반적인 보증서비스보다 내용·범위·기간이 현저히 확장된 경우 → 보험에 해당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 수준의 규제 적용 받을 수 있음 - 다만, 제3자의 경우보다 약한 수준의 규제 |
| | 제3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에 해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 보험에 해당 수탁자로서 수리·교환 업무를 수행할 뿐 서비스 제공 의무의 주체는 제조사·판매사인 경우 →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 수준의 규제를 적용 받음 - 등록 의무, 재무 규제, 주 보험감독당국의 검사·제재 등 |
| 담보 범위 (파손 담보 여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손 담보 가능 여부는 불명확 - 다만, 제조사·판매사의 일반적인 보증서비스보다 내용·범위가 현저히 확장된 경우 보험에 해당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있는 파손 담보 가능하다고 해석한 사례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별 입법례에 따라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 담보 가능 |

IV.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법규화 필요성

•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해외에서는 감독당국 지침이나 법을 통해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의 구분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 해소를 위해 노력
-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고려

제1안: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로 한정

-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규 등에 명시

제2안: 보증연장 서비스 확대 인정

- 서비스 제공자, 담보 범위 확대 인정하고 이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규 등에 명시

보험과 보증연장 서비스의 구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 해소

- 현재 실무를 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
- 다양한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다양한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가 기대
- 보험 규제 필요성, 보험회사와의 규제 차익 문제 제기 가능



- 확대 범위? (제공자 범위 측면/담보 범위 측면)
- 규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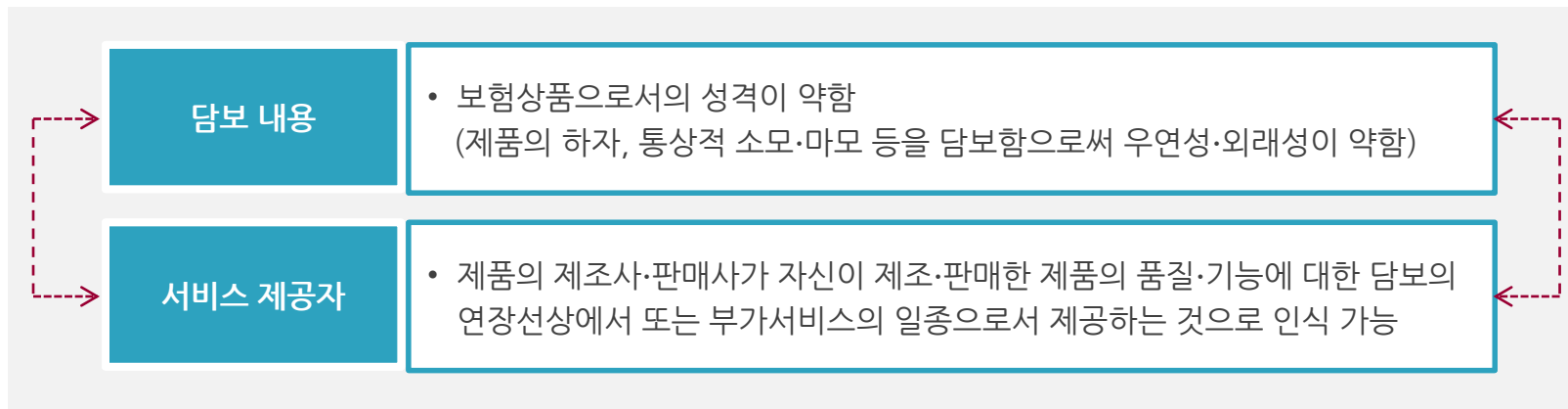
보증연장 서비스 확대 인정 시 주요 쟁점 - 제공자 범위 측면

• 제조사·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단순 서비스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

- 해외 사례: 영국·일본(보험) vs. 미국(서비스계약)
-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리 취급할 것인지

※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규율하지 않는 근거:

오직 **담보 내용의 특수성** 때문? **담보 내용의 특수성과 서비스 제공자의 특수성** 함께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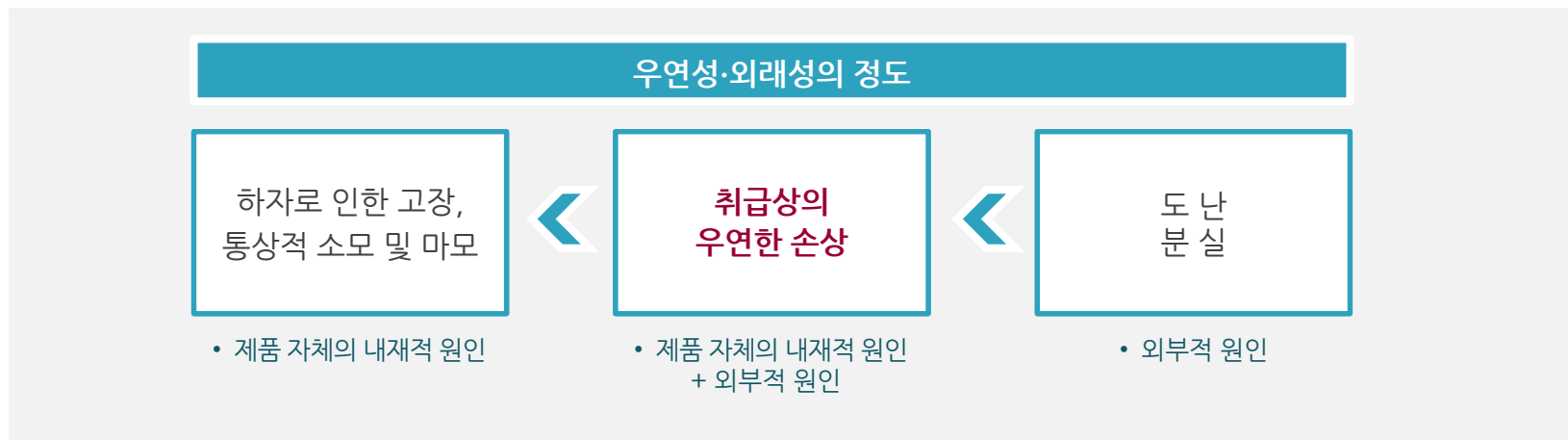


보증연장 서비스 확대 인정 시 주요 쟁점 - 제공자 범위 측면

- 제3자가 제공하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단순 서비스로 인정해줄 유인은 크지 않아 보임
 - 제3자의 경우 담보의 연장선이나 부가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위험 인수에 해당
 - **제품의 품질·기능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자가, 계약에 의해, 다수의 제품 구매자들로부터 고장 등의 새로운 위험을 인수**하고 이를 **집적·관리**한다는 것은 보험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 고려 사항
 - 향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 경쟁 촉진 필요성 등에 따라 재검토 가능
 - 실제 수리·교환은 제3자가 수행하더라도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연장 서비스 제공 주체 및 책임 주체가 제조사·판매사인 경우라면 제조사·판매사의 서비스 제공과 동일하게 취급함이 타당

보증연장 서비스 확대 인정 시 주요 쟁점 - 담보 범위 측면

-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담보하는 보증연장 서비스를 단순서비스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
 - 해외 사례: 영국(보험) vs. 일본·미국(서비스계약)
 - 파손은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의 담보 범위보다 우연성·외래성이 높음
 - 그러나 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의 경우, 해당 제품의 사용에 있어 그 발생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서 도난, 분실보다는 우연성·외래성의 정도가 낮음



보증연장 서비스 확대 인정 시 주요 쟁점 - 담보 범위 측면

•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 담보 허용을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소비자 편의 측면)

- ‘외부적 원인에 기인한 파손’ (보험 담보)과 ‘제품의 내재적 원인에 기인한 손해’ (보험 담보 범위에서 제외)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 발생 가능성 → 보험으로의 담보 여부가 불투명

〈예〉 휴대용 전자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려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파손? vs. 제품의 성능(내구성) 미달?

- 소비자 수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

• 고려 사항

-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의 의미 확정이 필요할 수 있음

〈참고〉 미국에서는, 해당 물품을 통상적이고 관례적으로 사용(normal and customary use)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에 대한 담보는 하자로 인한 담보에 부수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담보 기간 및 범위가 하자 담보보다 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음

보증연장 서비스 확대 인정 시 주요 쟁점 - 규제 수준 측면

• 보증연장 서비스 확대 인정 시 보험 측면에서의 규제가 수반될 필요

-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보다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짐 → 일정 수준의 보험 규제가 필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보험회사와의 규제 차이)
- 특히 **서비스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무적 요건 규제**(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화)가 필수적
- 불완전판매 방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및 제재 권한 등 고려 가능

<참고> 미국 NAIC 모델법상 서비스계약에 대한 주요 규제 (제3자 제공의 경우)

- 주 보험감독당국에 등록 의무
- 서비스계약에 따른 충실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무 요건 충족 의무
 - 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 ② 일정 금액 이상의 준비금 유지 및 일정 금액 이상의 주 보험감독당국 예치, 또는 ③ 일정금액 이상의 순자산 유지 의무
- 서비스계약상 일정 사항 명시 의무
 - 보험계약 담보 여부, 면책 요건, 자기부담금, 해지 관련 사항 등
- 영업행위시 준수 사항
 - 허위 광고 금지 의무, 구속조건부 거래 금지 의무, 거래 기록 보관 의무 등
- 주 보험감독당국의 조사·검사 및 제재 권한

<참고> 상조업 규제 선례

• 상조업 시장의 급격한 성장 및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라 2010년 상조업 규제 신규 도입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 상조업은 장례에 관한 일체의 용역 및 물품 등을 포함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대법원 판례상 보험 x)

※ 주요 규제 내용: 자본금 요건(15억원 이상), 영업 등록 의무(시·도지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 선수금 보전을 위한 조치 의무(보험계약, 공제계약, 예치계약 등), 상조서비스계약 모집시 설명 의무(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가격, 서비스 공급 시기,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 권한

<설립연도별 상조서비스업체 및 회원 수 증가 추이>

(단위: 개, 천 명)

| 연도별 | 1982~ 1990 | 1991~ 2000 | 2001~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기타 | 계 |
|------------|---------------|---------------|---------------|---------------|--------------|--------------|--------------|------------|------------------|
| 업체수 (%) | 5 (1.8) | 29 (10.3) | 59 (21.0) | 53 (18.9) | 50 (17.8) | 41 (14.6) | 38 (13.5) | 6 (2.1) | 281 (100.0) |
| 회원수 (%) | 276 (10.4) | 911 (34.3) | 839 (31.6) | 400 (15.0) | 144 (5.4) | 67 (2.5) | 16 (0.6) | 3 (0.1) | 2,656 (100.0)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09. 12. 31), 「상조서비스 피해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정책보고서』, 제3호

<연도별 상조서비스 피해 유형>

(단위: 건)

| 구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8월 |
|----------|-------|-------|-------|-------|---------|
| 광고 | 1 | - | - | - | 3 |
| 약관 | 2 | 8 | 10 | 7 | 23 |
| 품질 | 2 | 2 | 6 | 12 | 44 |
| 계약해제(해지) | 132 | 312 | 458 | 932 | 1,210 |
| 부당행위 | 35 | 83 | 168 | 178 | 194 |
| 거래관행 | 6 | 42 | 49 | 55 | 43 |
| 제도 | 13 | 14 | 5 | 18 | 14 |
| 가격,요금 | 19 | 19 | 112 | 90 | 38 |
| 계약이행 | 2 | 18 | 14 | 55 | 43 |
| 기타 | 7 | 11 | 11 | 29 | 35 |
| 계 | 219 | 509 | 833 | 1,376 | 1,647 |

맺음말

- 단기적으로는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상품으로 규제 받지 않는다는 점을 법규 등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 제거·경감하는 것이 바람직
- 장기적으로는 향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 등에 따라 단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보증연장 서비스의 확대 인정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겠음
 - 보증연장 서비스의 담보 범위에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포함시키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 가능
 - 보증연장 서비스 확대 인정의 경우, 일정한 보험 규제 적용 필요 → 해당 상품의 내용, 거래 구조, 서비스 가액 및 시장 규모, 서비스 제공자의 재무건전성 규제 필요성,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향후 추가 고려 사항
 -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일률적 규제 vs. 대상 제품별(자동차, 기타 전자제품 등) 차등 규제
 - 보험 측면 규제 vs. 경쟁법 측면 규제
 - 근거 법규: 보험업법 vs. 별도의 통합 법규(다양한 서비스계약 규율) vs. 감독당국 지침

감사합니다